

의안번호	제576호
의결 연월일	2013년 12월 일 (제325회)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봉희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11월 29일

#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김봉회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11월 29일  
발 의 자 : 김봉회, 김희수, 심기보  
김형근, 임 현, 정지숙  
김종필 의원

### 1. 개정이유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주차료 감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50% 감면함.(안 제5조제3항제2호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

나. 관련부서 협의 : 안전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.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1항제7호”를 “제1항제9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50퍼센트 경감 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(1000cc미만)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참석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장이 행사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차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총무과장은 당일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, 승인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50퍼센트 경감 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(1000cc 미만)</p>	<p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제9호에 따라 참석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장이 행사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차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총무과장은 당일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, 승인할 수 있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50퍼센트 경감 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(1000cc 미만)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대기환경보전법

#### 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

⑨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(標識)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
⑩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